



**글렌데일 결의안 2020-09호**

**글렌데일 비상사태 권한**

**발령일: 2020년 5월 15일**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부의 조치**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호 일부 폐지**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조에 의거하여,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증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 (코로나19)에 관한 늘어나는 우려로 필수불가결하였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확진자 수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쉽게 퍼지며 대중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침과 일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령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16일, 시의회는 특정 공공장소의 폐쇄와 출입제한을 명령하였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노력을 다시 두배로 늘렸다. 지역사회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막기 위해 시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고를 돕기 위해, 글렌데일 지방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의 비상사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적절한 사안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령하기 위해, 시의회는 글렌데일 시에서 대규모의 사람이 모이고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는 특정 장소를 임시 제한하는 명령을 발령한다.

2020년 3월 23일, 비상사태 서비스 국장은 시가 소유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시의 등산로와 스포츠/운동 경기장, 운동장, 운동시설은 문을 닫는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를 채택하였다.

2020년 3월 24일, 시의회가 명령을 인준하였다.

2020년 5월 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재택대피령 수정안과 일치하여,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는 일부 폐지되었고, 등산로와 하이킹코스를 열었고, 2020년 5월 12일, 시의회가 명령을 인준하였다.

글렌데일 시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권한으로, 비상사태 국장은 2020년 5월 15일 밤 11시 59분부터 지역 비상사태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다음 명령을 발령한다.

1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재택대피령 수정안과 일치하여,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는 일부 폐지되었고, 테니스 구장, 피클볼 구장, 커뮤니티 정원, 리버워크의 승마경기장은 이제 대중에게 개방한다. 이러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 거리를 두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시 결의안 20-41호, 20-55호의 규정에 따름)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항. 공공명령의 위반은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0항에 의거하여 시 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회부될 수 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본인의 재량을 사용하고 항상 명령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문에서 규정된 다른 집행법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될 수도 있다.

2020년 5월15일  
시간: 01:58 p.m.  
\_\_\_\_\_

서명인: Yasmin K. Beers  
애즈민 비어스(Yasmin K. Beers)  
비상사태서비스국장

양식을 승인함:  
마이클 가시아 (MICHAEL J. GARCIA), 시검사

서명인: Michael J. Garcia  
직분: 시검사  
\_\_\_\_\_

날짜: 2020년 5월 15일  
\_\_\_\_\_